

# 대한제국 1900년(光武4) 문관대례복 제도와 무궁화 문양의 상징성

이 경 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The Institution of Court Costume in the Year 1900 (the 4th Year of Korean Empire *Gwangmu*) and the Symbolism of *Mugunghwa*, the Rose of Sharon Pattern

Kyung-Mee Lee

Guest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투고일: 2010. 1. 28, 심사(수정)일: 2010. 2. 8, 게재 확정일: 2010. 2. 17)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templating and substantiating Korean Empire's court costume through relics and photos. Additionally, the meaning of the pattern of *Mugunghwa* as the national symbol in the court costume is conside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a phased introduction of western-style court costume was executed through *Ulmi* Reformation in 1895 and Court Costume Rule in 1900. *Ulmi* Reformation was characterized by transitional reformation because newly introduced system and traditional costume consolidated in costume. Under Court Costume Rule, however, by accepting western-style on contemporary costume, modernized style was settled in every respect of form and matter. The court costume comprised bicorn, coat, vest, pantaloons, sword, sword belt, white collar and white gloves at audience with the Emperor. Second, by examination of the relics of *Chigimgwan* and *Juimgwa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urt costume was manufacture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Russia on the basis of order. It was also identified by pictures that court costume was worn by diplomats dispatched. Third, the pattern of *Mugunghwa* in court costume was featured by embroidery of 6 petal pattern. And the pattern of *Mugunghwa*, as national symbol, has important meaning in view of history and national affection, while Japanese and European adopted the crest of the royal household. In summary, Korean Empire proclaimed modernized court costume institution to handle international relationship driven by West. It was uneasy reformation in adopting western court costume imported from overseas because its textile and style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costume. However, the willingness of Korean Empire should be reevaluated in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 in that Korean Empire established court costume proclaimed its sovereignty domestically and overseas, and that the pattern chosen as national symbol was that of *Mugunghwa* which is current national flower.

Key words: Korean Empire(대한제국), court costume(문관대례복),  
the pattern of *Mugunghwa*(무궁화 문양), *Chigimgwan*(척임관), *Juimgwan*(주임관)

## I. 머리말

대한제국은 1900년(光武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과 칙령 제15호 ‘文官大禮服制式’을 발표함으로써 서구식 관복제도를 제정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복식체계로부터 벗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일본에서 받아들이고 있던 복식 제도를 채택한 것이며,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서 통용되는 복식체계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1876년 개항 이후의 복식제도 개혁을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면, 최초로 이루어진 1884년 甲申衣制改革,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894년 甲午衣制改革, 1895년 乙未衣制改革을 이어 1900년(光武4) 서구식 문관대례복을 제정함으로써 명실 공히 근대적인 복식제도를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수용하게 되었다.

문관대례복<sup>1)</sup> 일습을 구성하는 것은 산형의 모자(山形帽: bicorn), 연미복 형태의 상의, 조끼<sup>2)</sup>, 바지, 패검으로, 이는 양복식 예복 일습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대례복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주권 국가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문양을 선정하여 전체 복식 항목에 자수하거나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월계수나 참나무(oak tree) 등 전통적으로 용기와 확고부동성의 의미를 가진 문양을 썼고,<sup>3)</sup> 1872년 서양식 예복을 받아들인 明治期 일본은 예부터 황실을 상징해 오던 오동문양을 채택하였다.

대한제국의 문양은 ‘權花’, 즉 무궁화이다. 황실의 姓인 ‘李’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되는 오얏꽃 문양이 1885년에 발행된 乙酉試鑄貨의 장식문양으로 활용된 것을 시작으로 1890년대 이후 우표, 훈장, 육군의 표장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사용된 것<sup>4)</sup>에 비해 무궁화 문양은 1900년 문관대례복의 문양으로 채택됨으로써 전형적인 무궁화 꽃송이 형태의 특징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무궁화 문양은 대한제국이 존속한 1910년까지 계속해서 문관대례복의 문양으로 활용되었고,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00년(光武4)에 제정된 대한제국 문관대례복 제도에 대하여 법령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남아있는 유물과 사진자료를 분석하여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문관대례복에 대한제국의 상징으로 채택된 무궁화 문양에 주목함으로써 무궁화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자료는 편년서인 『高宗實錄』, 『承政院日記』를 검토하고, 법령이 실린 『官報』, 『勅令存案』, 『法規類編』 등을 분석하였다. 유물자료는 부산박물관 소장 朴淇濬 대례복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俞吉濬 대례복을 직접 조사 및 촬영하였고,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閔哲勳 대례복은 1991년에 발표된 『大韓帝國時代 文物展』의 도록과 보고서를 참고하고 소장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관대례복 착용의 당시 사진자료는 지금까지 발간된 도록 및 검색자료를 참고하여 무궁화 문양이 분명하고 촬영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진은 직접 촬영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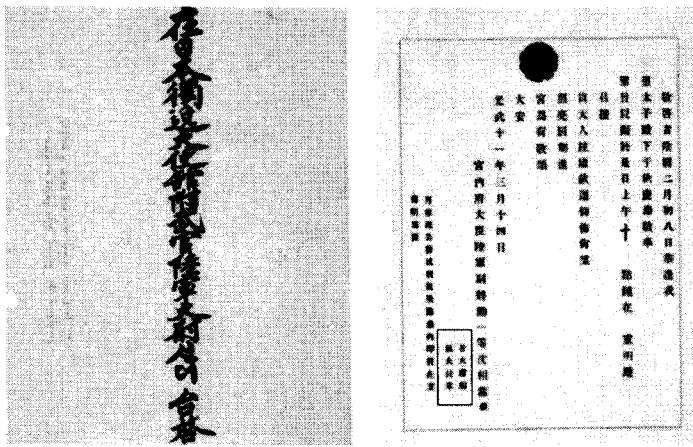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대한제국 문관대례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를 파악하고 문관대례복 제정의 의의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II. 문관대례복 제도의 도입과정

### 1. 1895년 을미의제개혁의 과도기적 도입

『經國大典』에 명시된 조선의 복식제도는 朝服, 祭服, 公服, 常服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는 동아시아 전통의 복식제도이다. 이에 비해 대례복 제도는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나누어 착용하는 근대적 복식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례복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미지를 문양화하여 자수함으로써 외교적인 상황에서 착용할 때 스스로 근대적 주권 국가임을 표방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선의 복식제도와 근대적 대례복 제도 간에는 동아시아의 예적 질서에 따라 운용되는 복식 제도와 서양 유래의 만국 공법적 조약체제에 맞는 복식제도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념의 세계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조선이 대례복 제도를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개항 직전인 1875년으로, 일본과 서계문체로 난항을 겪을 때였다.<sup>5)</sup> 이후 외국에 파견된 외교사절부터 대례복



〈그림 1〉 1907년 발급된 대한제국 황실 초대장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2006, p. 132.

제도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겸 수신사 朴泳孝가 남긴 『使和記略』에는 일본 천황의 생일 초대장에 ‘大禮服’ 착용이, 외무경 자택의 연회에 ‘小禮服’ 착용이 명시되어 있고 착용하고 가겠다는 답신 역시 남아 있다.<sup>6)</sup> 이와 같이 연회의 성격에 따라 초대장에 드레스코드를 명시하는 것은 서양식 외교의 관례이다. 〈그림 1〉<sup>7)</sup>은 1907년 대한제국 황제에서 독일인 헤르만 산더에게 발급한 황제 알현 초대장으로, 박스로 표시한 부분에 ‘着大禮服 佩大綬章’이 명시되어 있어서 대한제국에서도 당대의 외교 관례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과 다른, 서양식 국제 관계에서 통용되는 드레스코드를 조선이 처음 도입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 勅令 제17호

朝臣 大禮服은 黑團領을 쓰고 進宮時의 通常禮服은 周衣 裕護로 토산 紬布로 짓는다. 紗帽, 靴子를 착용하되 다음해 正朝부터 시행한다. 개국503년 10월 16일<sup>8)</sup>

위 예문의 칙령 제17호를 통해 조선에서 최초로 대례복, 통상예복 제도를 도입하되 복식의 내용은 흑단령과 주의(周衣: 두루마기)를 선택함으로써 1884년 갑신의제개혁에서 규정한 ‘公服=흑단령, 私服=착수의(窄袖衣: 두루마기)’의 내용 역시 계승하고 있다.

또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계속된 수정을 통해 답호를 가감할 것인지, 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욱 논의한 다음,<sup>9)</sup> 다음해인 1895년 을미의제개혁에서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복식령이 다시 발표되었다.

#### 宮內府大臣朝臣以下服裝式奉勅頒布

- 一. 朝服과 祭服은 그전대로 한다.
- 二. 大禮服은 黑團領, 紗帽, 品帶, 靴子 차림을 하되 모든 動駕時, 慶節, 間安, 禮接時에 착용한다.
- 三. 小禮服은 黑盤領窄袖袍, 紗帽, 束帶, 靴子로 대례복으로도 사용하고 무시 進見時에 이를 입는다.
- 四. 通常服色은 편리한 대로 하여 周衣, 裕護, 絲帶 차림을 하되 내외 관리가 任進時에 입는 것은 무관하지만 進見時에는 입지 못한다.
- 五. 士庶의 服色도 편리한 대로 하되 廣袖는 하지 말고 예복 이외에는 되도록 겹약하도록 하라.<sup>10)</sup>

위와 같이 1895년의 을미의제개혁부터는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의 체계를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다. 대례복은 대군주폐하와 관련된 동가, 경절, 문안, 예접의 경우, 소례복은 특별히 예를 갖추지 않고 進見 할 경우, 통상복은 임시적으로만 착용할 뿐 進見 할 경우에는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1895년 8월 10일 을미의제개혁이 발표되기 며칠 전인 8월 1일의 『承政院日記』에는 고종이 보현당에서 각국 공사를 접견 할 때 ‘일본 공사 三浦梧樓만 大禮服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다른 공사와 같이 알현할 수 없었으며, 뒤에

나아가서 뵙기는 했지만 賜宴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sup>11)</sup>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국제 관례상 한 국가의 왕을 알현할 때는 반드시 대례복을 착용해야 했다.

전통적으로 朝服, 祭服, 公服, 常服은 참석하는 儀禮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복식을 착용할지가 결정되었다면, 근대적 개념의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은 상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식의 종류가 결정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조선은 을미의제개혁에서 대례, 소례, 통상예의 근대적 예복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되는 복식의 종류에서 대례복은 廣袖의 黑團領, 소례복은 窪袖의 黑盤領, 통상복은 周衣로 정함으로써 근대적 형식에 전통적 내용을 결합시킨 과도기적 개혁에 머물렀다. 대례복 제도에서 형식과 내용이 세계통용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가 되어서부터이다.

## 2. 1900년(光武4) 문관대례복 제도의 도입

### 1) 文官服裝規則의 내용 분석

대한제국의 문관대례복 제도는 1900년(光武4) 4월 17일에 칙령 제13호 훈장조례와 함께 발표되었다.<sup>12)</sup>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sup>13)</sup>은 의정부 참정 金聲根의 奉勅으로 발표되었는데, 모두 11조의 규칙과 1조

의 부칙으로 총 12조이고 내용은 <표 1><sup>14)</sup>과 같다.

<표 1>의 문관대례복 규칙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례복 착용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제1조의 무관과 경관을 제외한 모든 문관과 제9조 궁내부와 외각부원 중 제2조 칙임관과 주임관이 착용대상자이다. 대한제국에서는 이와 같이 1900년 처음 제정 시에는 한 가지 형태의 문관대례복만 존재하다가 1906년(光武 10) 2월 27일에 '宮內府本府及禮式院禮服規則'이 관보에 반포됨으로써 문관대례복과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의 두 종류로 분화하게 된다. 문관대례복 착용에서 제외된 무관, 경관 및 문관 판임관의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서 예외의 규정을 정해 놓았다. 무관과 경관의 경우 전임하게 되면 문관 복장을 착용해도 되고, 무관은 때에 따라서 무관 복장을 착용해도 되고, 판임관의 경우는 소례복으로 대례복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인 제12조에서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 관원부터 먼저 시행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대례복 규칙의 제정은 외교적인 목적이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착용일에 대한 규정으로, 제3조, 제4조, 제5조가 해당된다. 대례복은 問安時, 動駕動輿時, 因公陞見時, 宮中賜宴時에 착용도록 규정되었는데 모두 궁궐에서 황제를 알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례복은 宮內進見時, 公式宴會時, 禮拜上官時, 私相賀

<표 1> 칙령 제14호 문관복장 규칙의 내용

분류	조목	내용
착용자	제1조	무관과 경관을 제외한 모든 문관으로 임명받은 자의 복장은 대례복, 소례복, 상복으로 나누어진다
	제2조	소례복과 상복은 최주판임관이 공동으로 착용하고 대례복은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
착용일	제3조	대례복 착용일 : 問安時 動駕動輿時 因公陞見時 宮中賜宴時
	제4조	소례복 착용일 : 宮內進見時 公式宴會時 禮拜上官時 私相賀慰時
일습의 구성품	제5조	상복 착용일 : 仕進時 燕居時 執務時
	제6조	대례복 일습 : 大禮帽 大禮衣 下衣(조끼) 大禮祫 劍 劍帶 白布下襟 白色手套
	제7조	소례복 일습 : 真絲高帽 歐制燕尾服 下衣(조끼) 褙
	제8조	상복 일습 : 歐制通常帽 歐制通常衣 下衣(조끼) 褙
착용자	제9조	궁내부와 외각부원은 물론이고 대소 관인은 본 규칙에 복종할 것
	제10조	무관과 경관도 문관으로 전임하게 되면 문관 복장 규칙에 복종할 것을 명하되, 무관은 때에 따라서 무관 복장도 착용할 수 있다
	제11조	판임관의 경우 제3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때는 소례복을 착용함으로써 대례복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부칙 : 본 규칙은 주总产值공사관원부터 먼저 시행할 것

慰時에 착용하도록 규정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궁내에서 황제를 진현하거나 공식 연회,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할 때, 사적인 하례와 위문시에 착용하는 것이다. 상복은 仕進時, 燕居時, 執務時로, 임시로 진현할 때, 연거할 때, 집무할 때 착용한다.

그런데 본 규정에서는 朝服과 祭服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최초의 의제개혁인 1884년 갑신의제 개혁에 '의복 제도에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통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朝服, 祭服, 裹服 같은 옷은 모두 옛 성현이 남겨놓은 제도인 만큼 이것은 변통할 수 없는 것이고...<sup>15)</sup>'라는 고종의 하명이 남아 있고, 앞서 인용한 바 있는 1895년의 을미의제 개혁에서도 '一. 朝服과 祭服은 그대로 한다.'와 같이 가장 앞서 朝服과 祭服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朝服, 祭服의 규정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899년(光武3) 1월 1일에 '朝臣의 服裝 중 祭禮, 賀禮, 燕禮 외 고금의 제식을 참작하고 각국에서 통행하는 규례를 본떠서 마련하라'고 掌禮院에 명한 점,<sup>16)</sup> 같은 해 8월 3일에 다시 한 번 朝服과 朝服을 유지하도록 언급한 점,<sup>17)</sup> 1900년의 문관복장규칙에서 朝服과 祭服의 착용 상황이 대례, 소례, 통상예에 더하여 편성되지 않은 점 등으로부터 추측컨대, 朝服과 祭服은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에서 대례복 착용일 규정에例祭의 규정을 명백하게 두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sup>18)</sup> 대한제국의 대례복 규정이 전통적인 의례를 어느 정도 계승한 바탕위에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습의 구성품에 대한 규정으로 제6조, 제7조, 제8조가 해당한다. 대례복은 大禮帽, 大禮衣, 조끼, 大禮袴, 劍, 劍帶, 白布下襟, 白色手套로 구성된다. 이 때 白布下襟은 흰색 칼라이며, 白色手套는 흰색 장갑이다. 소례복은 眞絲高帽, 歐制燕尾服, 조끼, 褒를 착용하는데 眞絲高帽은 실크햇이다. 상복은 歐制通常帽, 歐制通常衣, 조끼, 褒로 구성되고 이는 서양에서 입는 일반적인 남성 수트를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은 1895년 을미의제 개혁에서 근대적 대례복 제도의 형식에 전통적 관복인 흑단령을 결합한 과도기 체제를 운영하다가 1897

년 대한제국 선포이후 1900년 문관복장규칙의 제정을 통해 형식과 내용의 모든 면에서 근대적인 대례복 제도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 2) 文官大禮服制式의 내용 분석

문관복장규칙에서 정한 대례복은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을 통해 그 자세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다음의 <표 2><sup>19)</sup>로 정리하였다.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에 해당하는 대례복 도식은 1901년(光武5) 9월 3일자 관보의 부록에 실렸다. 각 관직별 대례복 도식을 다음의 <표 3><sup>20)</sup>으로 정리하였다.

<표 2>와 <표 3>을 바탕으로 문관대례복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형태

상의의 재질은 짙은 흑감색 羅紗이고, 칼라와 소매에만 연청색 羅紗를 사용한다. 羅紗란 16세기경 일본에 도래한 포르투갈인들이 서양의 모직물을 지칭할 때 'raca(라사; ラシャ)' 또는 'raixa(라이샤; ライシャ)'라고 발음한 것을 듣고, 그것을 '羅紗'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sup>21)</sup> 『倭漢三才圖會』에도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모직 상품'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2)</sup>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직물과 함께 들어온 경우로 대한제국 대례복의 재질인 羅紗는 방모직물을 의미한다.

형태는 墓襟의 연미복으로 규정되었다. 墓襟은 일본 대례복에서 쪼메에리(つめえり)로 발음되며 스텐딩 칼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본 대례복을 분석해 보면 墓襟이라는 같은 규정에서도 1884년(明治17)의 유작자 대례복은 앞목점 바로 아래에서 여며지는 형태이고, 1886년(明治19) 개정된 문관대례복은 가슴부분에서 V字形으로 합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植木淑子는 전자를 詰襟으로, 후자를 V字形으로, 刑部芳則은 詰襟과 開襟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sup>23)</sup> 대한제국의 대례복 제도에서 1900년(光武4)에서는 墓襟으로, 1906년(光武10)에서는 立襟으로 정하고 있는데,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달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만, 용어의 혼동을 일으킬 소

〈표 2〉 1900년(光武4)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의 내용

복식 항목 / 관직		칙임관				주임관											
상의	지질	深黑紺羅紗															
	前面	堅襟이고 흉부에서 小腹아래에서 합하며 퇴골의 좌우를 평평하게 가로로 분할하고 퇴골부터 사선으로 흘러 뒷자락까지 자른다. 가로문으로 金線이 있는데 칙임관은 너비 5촌 주임관은 너비 4분이다.															
	좌우	1등	2등	3등	4등	1	2	3	4	5	6						
	乳部	全槿花 6枝	전근화 4枝	전근화 2枝	전근화 無	無全槿花											
	表章	半槿花 6枝															
	좌우 여밈章	半槿花 4枝															
	後面	허리 아래를 좌우로 나누고 양단 모두 가로문 금선을 두른다. 뒷자락은 분활하고 금제 단추 각 1개를 달는데 직경은 7분이다. 칙주임관의 허리 아래 금선 안에 전근화 2枝를 두르고 칙임관은 전근화 1枝를 더하여 부가한다.															
	자질	연청색라사															
	소매	수구에서 거리 3촌에 가로의 금선 1조를 두르고 뒷부분의 봉제한 좌우 반면에 근화 1枝를 금수한다.															
	袖章	연청색라사															
조끼	칼라	橫紋 금선 2조를 붙이고 그 안에 근화2枝를 금수한다. 칙임관은 앞뒤의 양 꽃이 서로 대응되게 둔다.															
	지질	연청색라사															
	제식	단추는 금제로 직경 5분이고 거리는 2촌이다.															
바지	지질	심흑감라사															
	제식	좌우 측면에 금선을 붙이는데 칙임관은 兩條 凹凸紋 단조 요철문이고 너비는 일촌 黑毛天鵝絨															
帽	제식	산형이고 길이 1척 5촌 높이 4촌 5분으로 하며 머리 모양에 따라 가감이 있다. 장식털을 붙이는데 칙임관은 백색, 주임관은 흑색이다.															
	側章	정면에 근화 1枝를 붙이고 幹邊에 금제의 단추를 달는데 직경 7분이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금선을 달는데 칙임관은 요철문이고 주임관은 무늬가 없다. 모두 너비는 3분이다.															
劍	길이	劍章은 長이 2척 6촌 5분이고 자루는 칙임관은 白皮, 주임관은 黑皮로 하되 금선을 나전한다. 그 길이는 4촌 5분이고 鯉口는 2촌 6분이며 鐺은 5촌이다. 자루의 머리는 활모양이고 環鐺鐸鞘상에 칙임관은 근화를 조각하고 주임관은 없다.															
	재질	순금사															
	劍緒	금직															

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1900년(光武4)의 제도를 開襟형 칼라로, 1906년(光武10)의 제도는 立襟형 칼라로 지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1900년(光武4)에 제정된 대례의의 형태는 開襟형 칼라의 연미복이다. 이는 일본에서 1886년(明治19)에 개정된 대례복의 형태와 같다.<sup>24)</sup>

조끼는 짙은 흑감색 羅紗를 소재로 하여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지름5분인 단추를 2분 간격으로 단다.

바지는 짙은 흑감색 羅紗를 재질로 하여 좌우 측면에 금선을 붙인다.

모자는 黑毛天鵝絨을 재질로 하는데 天鵝絨은 『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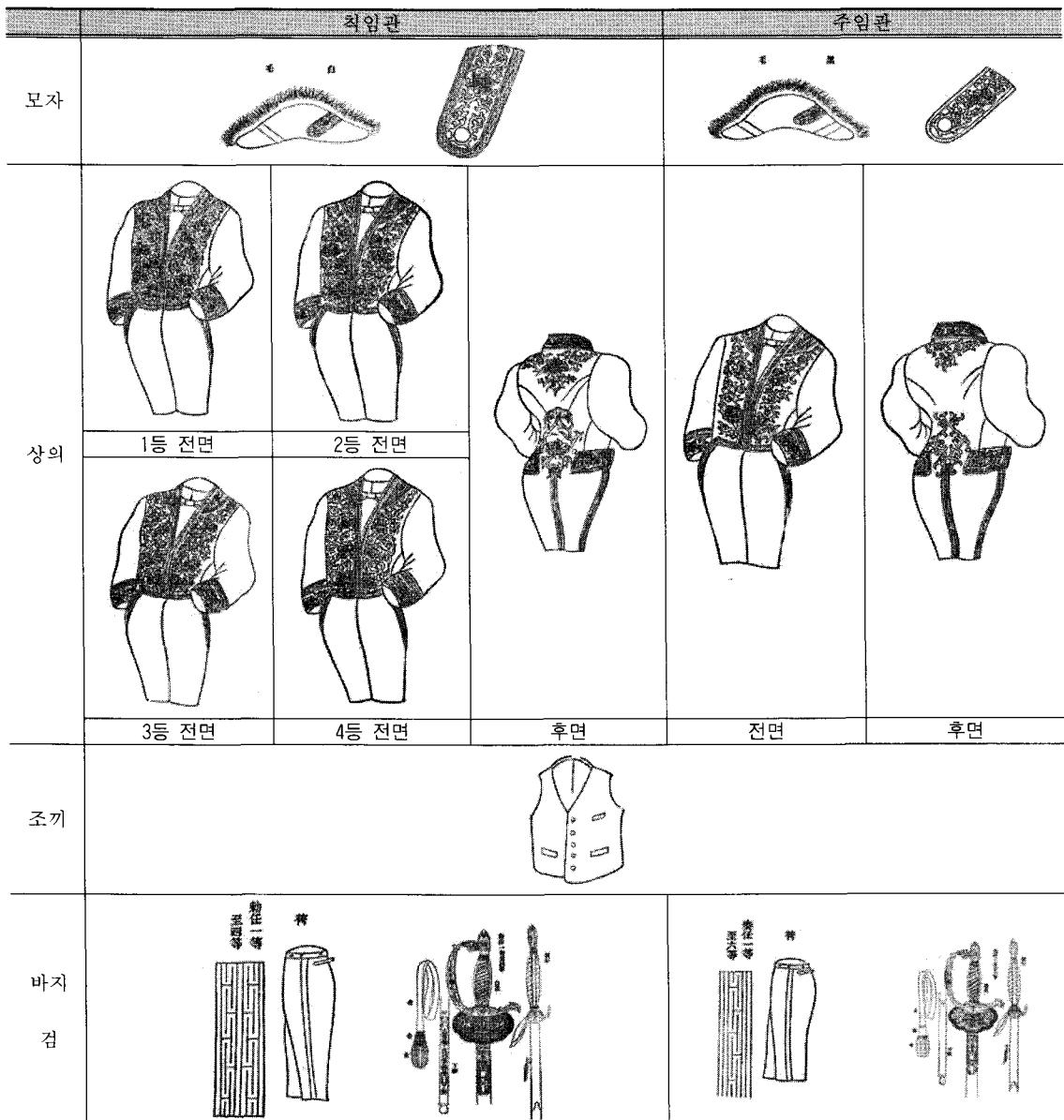
漢三才圖會』에서 ‘비로도(びろど; 벨벳)’라고 소개되어 있다.<sup>25)</sup> 모양은 山形 [bicorp]이며 칙임관은 백색의 장식털을, 주임관은 흑색의 장식털을 붙인다. 측면에 무궁화 1송이와 직경 7분인 금제 단추를 단다.

검의 자루는 칙임관은 흰색 가죽, 주임관은 검은색 가죽으로 구별한다. 鍔緒는 칙임관은 순금사로, 주임관은 금은사로 하고 鍔帶는 칙임관은 금직으로, 주임관은 은직으로 한다.

## (2) 金章

상의의 전면, 후면, 칼라, 소매, 모자의 측장, 검대

<표 3> 1900년(光武4)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도식



에는 전체적으로 무궁화를 금물 기법으로 자수하는 데 관직에 따라 문양의 많고 적음이 있다. 칙임관의 경우 앞여밈선을 따라서 반쪽짜리 무궁화를 좌우 3개씩 자수하고 좌우 길의 안쪽에는 완전히 편 무궁화를 자수하는데 1등은 좌우 3송이씩 6송이, 2등은 2송이씩 4송이, 3등은 한 송이씩 2송이를 자수하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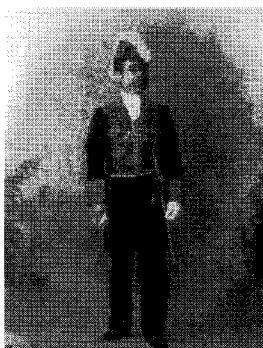
등은 전근화 자수가 없다. 주임관은 앞여밈선을 따라서 반쪽짜리 무궁화를 좌우 2송이씩 자수한다. 후면 金章 규정은 문관대례복 제식과 도안에 차이가 있는데, 도안을 기준으로 할 때 뒤 목점 아래와 뒤 허리 중심에 당초를 자수하고 그 안에 칙임관은 각각 무궁화 한 송이씩을 자수하고, 주임관은 무궁화가 없다.

袖章으로는 봉제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무궁화 한 송 이색을 자수하는데, 최주임관이 동일하다. 칼라에는 무궁화 두 송이를 대응되게 자수한다. 바지는 좌우 측면 금선에 최임관은 두 조의 요철문을, 주임관은 단 조의 요철문을 새긴다.

### III. 1900년(光武4) 문관대례복 제도의 실제

#### 1. 최임관 대례복의 착장 사진과 유물

앞에서 살펴본 문관대례복 제식에 근거를 두고 제작된 대례복의 사진자료와 유물자료를 통해 대한제국의 문관대례복의 운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이범진 사진  
서울의 추억, 2006, p. 203.



〈그림 3〉 이재완 사진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그림 2<sup>26)</sup>〉는 1900년 프랑스 주재 한국 공사 李範晉의 사진으로, 완전한 일습을 갖춘 정면 사진이다. 〈그림 3<sup>27)</sup>은 왕족으로 한성은행장을 역임한 李載完이 1903년에 촬영한 사진으로, 일습을 착용한 후 모자를 벗어서 손에 들었을 때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에서 앞중심선에 좌우 반근화 6송이와 앞길 안쪽에 좌우 전근화 6송이가 확인되고 이를 통해 최임관1등의 대례복임을 알 수 있다.

문관대례복 중 보고된 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관 최임관 1등의 유물인 閔哲勳의 대례복은 현재 한국자수박물관에 소장중이다.

〈표 4<sup>28)</sup>〉의 閔哲勳 대례복은 대례모, 대례의, 대례고, 조끼, 겹의 일습이 모두 보고된 바 있다. 禮衣 뒷 고대 안쪽에 Min Chul Whin Jules Maria 14. R.Du 4 Septembre. Paris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지 호주 머니 안쪽에 Jules Maria 1901.6.10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프랑스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9)</sup> 민철훈은 1900년(光武4)에 영국, 독일, 이태리 3국의 특명전권공사를, 1901년(光武5)에는 오스트리아 공사를 역임한 바 있어서 유럽 과경 당시 프랑스에서 제작하여 착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의 대례의를 보면 상의 앞면 좌우에 반개의 무궁화 6송이와 전개의 무궁화 6송이가 자수되어 있고 바지에는 2조의 요철문이 새겨진 장식선을 붙이고 있다.

〈표 5<sup>30)</sup>〉는 전근화 4송이가 자수된 최임관 2등 朴淇淳의 대례복으로,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본 대례복 유물은 대례모, 대례의, 겹만 남아

〈표 4〉 민철훈 대례복 사진

	대례모	대례의	조끼	겹과 겹대
사진				
	大韓帝國時代文物展, 1991, pp. 5-6			

〈표 5〉 박기종 대례복 사진

	모자	상의	검
사진			
설명	Wide-brimmed Korean hat (moja).	Two dark-colored Korean jackets (sangui) with white piping at the cuffs and hem.	A long, straight Korean sword (geum).

〈표 6〉 유길준 대례복 사진

	전체	바지	검대
사진			
설명	The full set of Yugi Ju's formal attire, including a dark jacket and trousers.	Three pairs of dark Korean trousers (baji) standing upright.	A long, dark Korean sword belt (geumbat).

있고 현재 전시를 위해 밀납 인형을 제작하고 비슷한 소재의 바지, 셔츠, 타이, 구두를 구비하여 착장시켜 놓았다. 박기종은 부산에서 일본어 通史로 활동하였던 인물로, 1차 수신사 김기수와 2차 수신사 김홍집의 통사로 일본을 다녀온 경험을 살려 1905년에 변리공사를 역임하였고 1907년 68세로 졸하였다. 1900년에 중추원 의관 주임관 4등으로 임명된 바가 있다.

〈표 5〉에서 대례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감은 검은색 모직이고, 안감은 흰색 견직물을 재료로 하였고 소매, 칼라, 축면의 주머니는 연청색 모직으로 제작하였다. 밀납 인형에 착장된 상태로 조사를 하여 상의 안감에 있을 수 있는 제작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앞 중심선 좌우에 반근화 6송이와 길 안쪽 좌우에 전근화 4송이가 자수되어 있어서 칙임관 2등의 대례복 유물임을 알 수 있다. 대례모는 칙임관의 흰색 털이 가식된 산형 모자이다.

현재까지 전근화 2송이의 칙임관 3등과 전근화는 없고 반근화만 있는 칙임관4등의 대례복 유물이나 사진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칙임관 대례복 유물과 사진의 인물은 외교관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다. 이를 통해 1900년(光武4)의 문관대례복 규칙은 부칙인 제12조 ‘주립외국공사관원부터 먼저 시행할 것’에 의해 1900년 당시 외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공사관원들을 중심으로 착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제작의 축면에서도 외국에서 직접 제작하여 착용하기가 더 편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주임관 대례복의 착장 사진과 유물

주임관 대례복을 착장한 사진으로 〈그림 4〉는 프랑스 주재 한국 공관의 제2서기관 남필우의 사진이다. 〈그림 2〉의 이범진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여밈선 좌우에 반근화만 4송이 자수되어 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산형 모자의 깃털색이 검은색이므로 주임관의 차림이다. 〈그림 5〉는 검은색 털이 삽식되어 있는 주임관의 모자를 쓰고 좌우에 반근화 4송이가 자수된 대례복 차림의 프랑스인 M. Roulin, Ch.로,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



〈그림 4〉 남필우 사진  
서울의 추억. 2006, p. 204.



〈그림 5〉 프랑스 명예 총영사  
서울의 추억. 2006, p. 203.



〈그림 6〉 이한웅 사진  
殉國烈士李漢應先生遺事. 1947, p. 1.

자격이어서인지 대한제국의 주임관 대례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6〉<sup>31)</sup>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최초로 순국한 李漢應의 사진으로, 그는 당시 영국에 파견된 대한제국의 서기관이었다. 사진을 통해 좌우 반근화 4송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임관 대례복 유물로는 〈표 6〉<sup>32)</sup>의 유길준 대례복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유물로, 대례의와 조끼, 겸대가 보고되어 있다.



〈그림 7〉 유길준 대례복 상표  
2008.4.23. 고려대 박물관  
유물조사실에서 촬영

〈표 6〉의 상의를 보면, 겉감의 재질은 검은색 모직이고 안감은 검은색 견직물로, 안감을 백면으로 규정한 일본과는 달리 대한제국 1900년(光武4) 제도에는 안감 규정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문관 최임관 1등 민철훈 대례복, 문관 최임관 2등 박기종 대례복의

안감은 흰색인데 비해 유길준 대례복의 안감은 검은색이므로 안감의 색으로 칙주임관을 구별했을 가능성도 있고, 안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상의 안감 뒷고대 아래에 〈그림 7〉의 'L.Mihelson(제작자 이름), 재정분담, 상트페테부르크 시묘노프스카야 5번지'라는 상표가 붙어 있어서 러시아에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민철훈 대례복은 프랑스에서, 유길준 대례복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 대례복의 제작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매와 칼라는 연청색보다는 짙은 푸른색 모직이고 측면의 주머니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듯이 겉감과 같은 옷감으로 제작하였다. 상의에는 전체적으로 당초문이 자수된 사이에 반근화가 좌우 4송이 자수되어 착용 후 앞 중심선을 따라 전근화 2송이를 이룬다. 칼라, 뒷목아래, 뒤허리 중심, 좌우 주머니에는 균화가 없이 당초만 자수되어 있고 袖章으로는 봉제선을 사이에 두고 전근화 두 송이를 자수하고 있다. 소매는 이중소매로 구성되어 있다. 단추는 금도금하여 그 위에 무궁화 문양을 붙였다. 주임관 도식화와 일치되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바지 겉감의 재질은 검은색 모직이고 허리부분에 만 안단이 대어져 있다. 좌우 측면에 금선을 붙였는데 요철문이 단조만 새겨져 있고 폭은 4cm이다. 바

지는 단추로 여미개 되어 있고 부착된 단추에는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유물과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자수된 무궁화의 모양이 모두 조금씩 다른데 대한제국에서 제시한 문양 도안이 제작국, 제작업체에 따라 구현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sup>33)</sup> 주요 재료인 羅紗, 天鵝絨은 물

론이고 구성방식 역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질적인 복식을 국가의 제도로 채택한 이상 그 제작을 외국에 의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제국 정부가 제시한 도안은 제작되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례복 제작은 어떤 통로를 거쳐 이루어졌

〈표 7〉 문관대례복의 무궁화 문양 분석표

문양 구분	최형의 도안	최입관 2등 박기종 대례복	주입관 유길준 대례복
모자 우측장			유물 없음
칼라 소근화			유물 없음
소매 전근화			
앞중심선 반근화			
단추	도식화 없음		
검의 나전세공			유물 없음
검대	도식화 없음	유물 없음	

는지, 제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등 제작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더욱 발굴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 IV. 문관대례복 제도의 무궁화 문양

### 1. 무궁화 문양의 특징

칙령에서 제안한 무궁화 문양의 도안과 유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모습을 비교해 보면 <표 7><sup>34)</sup>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기종의 대례복은 제작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유길준의 대례복은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제시하는 대례복 도식을 바탕으로 하여 착용자의 상황에 따라 제작을 의뢰한 곳이 달랐다면 도식에서 제안한 무궁화 문양의 표현 기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표 7>을 통해 제작자에 따른 무궁화 표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무궁화 문양은 모자의 우측장, 대례의의 전후면, 칼라와 소매, 검대에 자수되어 있고 대례의와 조끼의 단추에는 따로 제작하여 붙였으며, 검에는 나전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자수된 무궁화의 형태는 무궁화 한 송이를 정면 위쪽에서 비스듬히 바라본 모습으로, 시선에서 면 꽃잎은 완전히 펼친 상태로 표현하고 가까운 꽃잎은 바깥으로 살짝 접힌 형태로 표현하였다. 문양의 표현은 양감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충진재를 먼저 붙이고 그 위를 코일형으로 만든 금사를 이용하여 평수로 메운 후 잎맥과 테두리를 광택이 나는 금사와 스팽글로 장식하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꽃봉오리의 안쪽 가운데에는 꽃술을 강조하여 자수하였다. 검의 무궁화 도안은 수직으로 내려다 본 꽃잎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박기종의 대례복을 통해 도안대로 나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례복의 무궁화 문양은 꽃잎수가 6장이라는 점에서 현재 사용 중인 꽃잎 수 5장인 일반적인 무궁화 도안은 물론 실제의 무궁화 꽃과도 차이가 있다. 실제의 무궁화 꽃잎은 5장인데 이를 도안화하는 과정에서 문관대례복의 무궁화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꽃잎 6장으로 한 것이다. 반근화의 경우에는 완

전한 꽃잎 2장과 반쪽짜리 꽃잎 2장으로 하여 총 꽃잎수가 3장이 되므로 역시 6장의 반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칙령의 도안부터 6장으로 제시되었고 대례복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도안에 가깝게 제작한 것이므로 대한제국이 처음부터 문관대례복 무궁화 문양의 꽃잎수를 6장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관 칙임관 1등의 경우 꽃잎 6장의 전근화가 좌우 3송이씩 6송이를 수놓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문관대례복의 완전한 숫자는 6이 된다.



<그림 8> 일제시대 무궁화수  
지도. 독립기념관 전시품도록.  
2006. p. 143.

꽃잎 6개의 무궁화 문양은 문관대례복이 지난 특징으로, 이후에는 꽃잎 5개의 사실적 문양으로 바뀌고 전통 자수 기법과 결합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으로 <그림 8>의 일제시대에 남궁 억에 의해 창안된 무궁화수 지도를 예로 들 수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대한제국의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채택된 무궁화 문양은 國花로 인식됨으로써 일제시대에 민족정신을 결집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 것이다.

### 2. 무궁화 문양의 상징성

관복에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을 자수한다는 개념은 조선에서는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 전통적인 복식에 언급되는 문양으로 면복의 12장문과 왕의 보, 백관의 흥배 문양이 있고 이들은

유교의 자연주의 사상, 덕치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古例에 근거를 둔 문양들이었다. 또한 이를 문양은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문의 숫자를 정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예적 질서를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유교적 세계관이 상징하던 문양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자국을 대표하는 문양을 복식에 자수한 문관대례복 제도의 성립은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근대적 조약을 맺는 주체로서 자국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력히 표방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대적인 국가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성립한 후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조선의 경우 개항이후 대한제국의 光武개혁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제국의 문관대례복 전체 복식 항목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문양인 '槿花'는 무궁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무궁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국화로 제정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많이 알려져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현 가운데 무궁화를 언급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 이규보의 '次韻文長老朴還古論槿花并序'로 알려져 있다.<sup>36)</sup> 이 시에서 이규보는 '槿花를 왜 무궁화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해 '이 꽃은 원래 잠깐 피어 하루를 가지 않음이 허무한 인생과 같지만 이를 두고 오히려 無窮이라 이름한 것이다'라는 시인의 생각으로 답을 맺고 있다.

이후 무궁화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는데,<sup>37)</sup>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옛 이름들의 고사를 변증하면서, '山海經에 해동에 군자국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허리에 칼을 찼으며, 서로 양보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다. 또 이 나라에는槿花가 있는데, 이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든다.', '古今記에는 군자국은 지방이 1천리이고 무궁화나무가 많다'등 중국 문헌의 예를 조사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와 연결 짓고 있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sup>38)</sup> 이 내용은 『林下筆記』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당 현종은 신라를 일러 군자국이라 칭하였고, 또 고려 때는 表詞에 본국을 槿花鄉이라

칭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용되어 있다.<sup>39)</sup>

목수현은 역사적으로 무궁화는 국토와 연관된 꽃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고찰하고 공식적으로 국화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꽃 또는 겨례 꽃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던 인식이 무궁화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40)</sup> 이러한 논지로 일본의 황실 문양인 국화와 오동에 해당하는 두 식물 문양을 대치할 두 가지 꽃으로서 국화의 대용으로 오얏을, 오동에 해당하는 꽃으로 무궁화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41)</sup> 요약하면 역사적으로 국토를 상징해 왔던 꽃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꽃을 삼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관대례복에 사용된 문양은 최임관은 五七桐, 주임관은 五三桐으로, 오동문양은 일본본왕실과 무가에서 家紋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것이었다. 이에 비해 대한제국 이전 조선에 있어서 왕실이나 집안의 문장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대례복을 제정할 때 무궁화를 국가 상징 문양으로 삼은 것은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왕실을 상징하는 문장을 주로 이용한 유럽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민족의 역사와 애정을 배경으로 한 꽃인 무궁화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V. 맷음말

본 연구는 1900년(光武4)에 제정된 대한제국 문관대례복 제도에 대하여 법령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남아있는 유물과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문관대례복에 대한제국의 상징으로 채택된 무궁화 문양에 주목함으로써 무궁화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관대례복의 도입은 1895년 을미의제개혁과 1900년(光武4) 문관복장규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을미의제개혁에서는 대례복 제도의 형식과 전통식 관복의 결합이라는 과도기적 개혁 양상을 보였고, 1900년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제도에 양복식 예복을 모두 갖추어 형식과 내용의 모든 면

에서 근대적인 대례복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900년 문관복장 규칙을 따르면, 대례복은 間安時, 動駕動輿時, 因公陞見時, 宮中賜宴時에 大禮帽, 大禮衣, 조끼, 大禮袴, 劍, 劍帶, 白布下襟, 白色手套를 착용하고, 소례복은 官內進見時, 公式宴會時, 禮拜上官時, 私相賀慰時에 真絲高帽, 歐制燕尾服, 조끼, 袴를 착용하며, 상복은 仕進時, 燕居時, 執務時에 歐制通常帽, 歐制通常衣, 조끼, 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최임관 1등 민철훈, 최임관 2등 박기종, 주임관 유길준의 대례복 유물을 조사한 결과 1900년(光武4) 제정된 문관대례복은 착용자의 상황에 따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해외에서, 대한제국에서 제시한 복장제식과 도안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사전자료를 통해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들부터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한제국 문관대례복의 무궁화 문양은 꽃잎 수를 6장으로 도안하고 자수하였는데, 이는 문관대례복이 지난 중요한 특징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가상징 문양으로 채택된 무궁화 문양은 왕실을 상징하는 문장을 주로 채택한 유럽과 일본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민족의 역사와 애정을 배경으로 한 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후 무궁화 문양은 國花로 인식됨으로써 일제시대에 민족정신을 결집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00년(光武4) 대한제국은 문관대례복 제도를 제정하였다. 전통적인 복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복식을 공식 복식으로 채택한 것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 관계에서 스스로 근대적인 주권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세계통용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인 점과 현재의 國花로 계승되고 있는 무궁화 문양을 국가 상징물로 채택하였다는 점은 한국복식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조선과 대한제국에서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으로부터 1900년 4월 문관대례복이 성립하기 전까지 흑단령을

朝臣의 '대례복'으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문관대례복이 흑단령, 즉 전통식 관복인지, 서구식 관복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문관대례복'은 1900년에 발표된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 칙령 제15호 '文官大禮服制式'에서 사용한 용어로, 유럽으로부터 유래한 서구식 예복을 지칭한다.

- 2) 1900년 당시 법령에서 下衣는 상의 아래에 입는 옷, 즉 조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돋기 위해 당시 법령 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서술할 때는 下衣(조끼)로 쓰고, 본문의 서술에는 조끼로 바꾸어 쓰도록 하겠다.
- 3) Valerie, Steele (2005). *Encyclopedia of Clothing and Fashion*, 1권. Farmington Hills, MI: Thomson Gale. pp. 312-314.
- 4) 목수현 (2008).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88-191.
- 5) 조선이 서계문제를 통해 서구식 문관대례복을 최초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이경미 (2009a). 19세기말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서계(書契) 접수 문제를 통해-. *한국의류학회지*, 33(5) 참조.
-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미 (1999). 19세기 개항 이후 한일 복식제도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7-59와 이경미 (2009b).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사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류학회지*, 33(1) 참조.
- 7) 국립민속박물관 (2006).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서울: 시월. p. 132.
- 8)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개국 503) 12월 16일 戊午.
- 9)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1895) 3월 29일, 지금부터 公私禮服 중 裕護를 제외하고 進宮時만 帽帷絲帶를 사용하고 周衣는 宮民이 일체로 흑색류를 따르라. 개국 504년 3월 29일 칙령 제67호.
- 10)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1895) 8월 10일 戊寅. 宮內府大臣、朝臣以下服章式奉勅, 頒布. 一、朝服과 祭服은 仍舊하고 一, 大禮服은 黑團領、紗帽、品帶、靴子凡於 動駕時와 慶節과 間安과 禮接時에 著用하고 一, 小禮服은 黑盤領、窄袖袍、紗帽、束帶、靴子大禮服時에도 或用之하고 無時進見時에 用之하고 一, 通常服色은 從便하고 周衣、裕護、絲帶內外官仕進時則無礙하고 進見時則不著하고 士庶服色도 從便하고 廣袖는 除去하고 禮服外務從儉約하고 라.
- 11)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개국 504) 8월 1일.
- 12) 훈장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논의로 하지만, 대한제국의 훈장이 다른 나라의 훈장을 참고하되 그 내용은 조선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창안되었다는 것은 근대적 대례복 제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금척대훈장은 태조의 고사에서 나오는 金尺으로부터, 이화대훈장은 황실 상징의 꽃으로부터, 태극장은 국가의 표식으로부터, 紫鷹章은 태조의 무훈에 관한 고사로부터 취하였다. 고종실록, 권 40, 光武4년 4월 17일, 목수현. 앞의 논문, pp. 112-119 참조.
- 13) 규칙, 제식, 도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규순 (2008).

- 藏書閣 소장 『官服章圖案』연구. 藏書閣, 19, p. 236 참조.
- 14) 의정부(조선)편(1894-1909), 간자미상. 勅令存案.
  - 15) 고종실록 권21 고종21년 (1884) 윤5월 25일 戊辰.
  - 16) 고종실록 권39 고종36년 (1899) 1월 1일.
  - 17) 承政院日記 고종 36년 6월 27일(癸卯, 양력 8월 3일). 詔曰以朝臣服章變通事向有詔勅而有所未遑矣出疆使臣服飾爲先參酌外規而改正凡在廷大小臣僚仍着小禮服朝覲參班陪從時加飾胸背作爲大禮服蓋盤領穿袖乃國初遺制亦粵我祖宗朝所嘗服御者也此非創有乃恭遵舊章也其於祭禮賀禮依前着黑團領朝祭服此是朝家重禮之至意惟爾臣工咸須知悉.
  - 18) 일본의 문관대례복 착용일은 1872년(明治5) 11월 29일 太政官 第373號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禮服 着用日(明治6년 태정관 제91호로써 신무천황즉위일을 紀元節로 개정함)新年朝拜 元始祭 新年宴會 伊勢兩宮例祭 神武天皇即位日 神武天皇例祭 孝明天皇例祭 天長節 外國公使參朝ノ節、通常禮服 着用日 參賀 禮服御用召並任敘御禮 右之通被相定候事. 즉 일본에서는例祭에서도 대례복을 착용하도록 하였지만 대한제국에서는 규정이 없다. 이경미 (2009a). 앞의 논문, p. 736.
  - 19) 의정부(조선)편 (1894-1909), 간자미상. 勅令存案.
  - 20) 官報附錄, 1901년(光武5) 9월 3일. 〈표 3〉의 도식은 관보부록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21) 山根章弘 (1983). 羊毛の語る日本史. 東京: 東洋印刷株式會社. pp. 15-17.
  - 22) 寺島良安 (1712). 倭漢三才圖會. 羅紗.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 23) 植木淑子 (1994). 明治初期における文官大禮服. 日本服飾學會誌 13號. 刑部芳則(2002). 岩倉遣歐使節の文官大禮服について. 風俗史學 19號. 참조.
  - 24) 일본 문관대례복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미 (2008).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폐려다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44-69를 참조할 것.
  - 25) 寺島良安. 위의 책. 天鵝絨.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본
  - 26) 고려대학교 박물관 편 (2006). 서울의 추억. 서울: 도서출판 삼도. p. 203.
  - 27) 한국금융사박물관 유물번호 421007. 이재완 사진. 자료검색일 2010. 1. 20. 자료출처 <http://www.shinhanmuseum.co.kr>
  - 28) 민철훈 대례복은 허동화 발행 (1991). 大韓帝國時代文物展. 서울: 영인 프로세스, pp. 5-6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부록으로 발행된 유희경, 이강칠, 허동화, 이순자 (1991). 大韓帝國時代 文武官服飾制度-大韓帝國時代 文物展 가다로그 附錄.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발행. 예 유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려 있다.
  - 29) 허동화 발행. 위의 책, p. 5.
  - 30) 본 유물에 대한 조사 및 촬영은 2008년 5월 19일 부산박물관 전시실에서 실시되었다.
  - 31) 손세창 (단기 4290). 殤國烈士李漢應先生遺事. 대구: 문예홍보사, p. 1.
  - 32) 본 유물에 대한 조사 및 촬영은 2008년 4월 23일 고려대학교 박물관 유물조사실에서 실시되었다.
  - 33) 대례복을 해외에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최규순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官服章圖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안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외교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규순. 앞의 논문, pp. 244-246.
  - 34) 〈표 7〉의 칙령의 도안은 官報附錄, 1901년(光武5) 9월 3일. 의 칙령에서 무궁화 부분만 확대한 것이다. 칙임관 2등 박기중 대례복은 미주 31)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주임관 유길준 대례복은 미주 33)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부터 무궁화 부분만 확대한 것이다.
  - 35) 독립기념관 (2006).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충남: 삼성종합인쇄, p. 143.
  - 36) 沈在箕 (1999). 우리말 어원(5) “無窮花의 내력”. 한글한자문화, 7, pp. 31-33.
  - 37) 목수현. 앞의 논문, p. 96.
  - 38) 李圭景(刊寫年未詳).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編5 論史類1, 東方舊號故事辨證說.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참고. 자료검색일 2010. 1. 20. 자료출처 한국종합DB 홈페이지 <http://db.itkc.or.kr>
  - 39) 李裕元 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1999). 國林下筆記, 제11권. 文獻指掌編 君子國 자료검색일 2010. 1. 20. 자료출처 한국종합DB 홈페이지 <http://db.itkc.or.kr>
  - 40) 목수현. 앞의 논문, p. 96.
  - 41) 위의 논문, pp. 194-197.